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총무과	1

(2014. 3. 31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이진표]

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4년 3월 21일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- 2014년 3월 25일

4.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사용료)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
5. 개정이유

마포구청사 12층 강당이 하늘도서관으로 조성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에서 12층 강당을 삭제하고, 사용료 부과기준 등의 용어를 정비하여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

6. 주요내용

-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'구청사 12층 강당' 삭제(안 제3조제1항제4호)
- 시설물의 용도에서 12층 강당의 용도였던 결혼식장 삭제(안 제3조제2항)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7. 검토결과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청사 12층 강당이 폐쇄되고 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'구청사 12층 강당'을 삭제하고 (안 제3조제1항제4호)
- 시설물의 용도에서 12층 강당의 용도였던 결혼식장을 삭제 (안 제3조제2항)하는 등
-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시설물 정비 및 사용료 부과기준 등의 용어를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하여, 청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음

관계법령 및 근거

[지방자치법]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>